

28. 영국(United Kingdom)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08년(노령연금), 1911년(장애보험), 1925년(노령 및 유족보험)
- 현행법 : 1992년(통합법령), 1995년(연금), 1999년(복지개혁 및 연금), 2000년(자녀부양, 연금, 사회보장), 2002년(연금크레딧), 2004년(연금), 2007년(연금), 2009년(복지개혁), 2011년(연금), 2014년(연금), 2015년(국가연금규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
 - ※ 2016년 4월, 2016년 4월 6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신 국가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신국가연금제도는 기초국가퇴직연금 및 부가국가연금제도로 구성된 이전 2층 제도를 대체함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 당연적용 : 주간소득이 £157(2018년 4월 기준 £162)~£866(2018년 4월 기준 £866)인 근로자; 연간소득이 £6,025(2018년 4월 기준 £6,205) 이상인 자영자
 - 임의적용 : 임의가입 가능(기초국가퇴직연금제도와 유족급여제도만 가능)
- 고용 및 부양수당(기여제 및 자산조사 ESA)
 - 당연적용 : 법정 질병수당 또는 모성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근로자 및 자영자; 특정 실업 및 비근로자(기여제 ESA만 가능)
- 사회부조 : 영국 거주자

4. 자원조달

- 가입자
 - 사회보험
 - 주간소득 £157~£866(2018년 4월 기준 £162~£892)의 12%(특정 기혼여성 및 미망인은 5.85%)에 £866(2018년 4월 기준 £892)를 초과하는 주간소득에 대해 2% 추가 납부
 - 임의가입자는 주당 £14.25(2018년 4월 기준 £14.65)의 정액보험료 납부

-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모성급여, 산재급여 및 실업급여의 재원도 됨
- 사회부조 : 없음

○ 자영자

- 사회보험
 - £6,025(2018년 4월 기준 £6,205) 이상 £8,164(2018년 4월 기준 £8,424) 미만 소득에 대해 주당 £2.85(2018년 4월 기준 £2.95)의 정액 보험료 납부, 연간 신고소득 £8,164 이상 £45,000 미만(2018년 4월 기준 £8,424~£46,350) 소득의 9% 추가 납부, 연간 신고소득 £45,000(2018년 4월 기준 £46,350) 초과 소득의 2% 추가 납부
 - 자영자 보험료 중 15.5%가 의료급여를 위한 국가건강서비스에 할당됨
 - 자영자의 보험료는 고용 및 지원수당(장애급여), 모성수당의 재원도 됨
- 사회부조 : 없음

○ 사용자

- 사회보험
 - 주당 £157(2018년 4월 기준 £162)를 초과하는 근로자 소득의 13.8%
 - 사용자의 보험료는 산재급여 및 실업급여의 재원도 됨
- 사회부조 : 없음

○ 정부

- 사회보험
 - 기여제 제도의 모든 결손금액 보전
 - 정부의 보험료는 질병급여, 산재급여 및 실업급여의 재원도 됨
- 사회부조
 - 자산조사 수당 및 기타 비기여급여 총 비용

5.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기초국가퇴직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 또는 인정기간이 30년 이상으로 2016년 4월 6일 이전에 65세(남자) 또는 63세(여자) 도달자. 기초국가퇴직연금은 현재 폐지 중이며, 2016년 4월 6일 이후에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한 가입자에게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음
 - 가입자가 자녀, 노인, 또는 장애인 친척을 부양한 기간 또는 가입자가 특정 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부분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피부양자보조금 : 피부양자의 근로소득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피부양 성인에 대해 지급. 현재 더 이상의 신규 신청은 불가 하며 현재의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2020년 4월에 정지 예정
- 연기연금 : 연기 가능. 연령제한 없음
- 고령 추가금 : (2016년 4월 6일 이전에) 80세 이상
- 기초국가퇴직연금의 해외 지급 가능. 단, 통상거주지가 EU국가, EEA국가, 스위스 또는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
- 제2국가연금(사회보험, SSP)
 - 보험료 납부 또는 인정기간이 30년 이상으로 2016년 4월 6일 이전에 65세 (남자) 또는 63세(여자) 도달자. 최저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특정 급여를 수급 중이어야 함. 제2국가연금은 현재 폐지 중이며, 2016년 4월 6일 이후에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한 가입자에게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음
 - 최저소득액은 연간 £5,876(2018년 4월 기준 £6,032)
- 신국가연금(사회보험, nSP)
 - 보험료 납부 또는 인정기간이 35년 이상으로 2016년 4월 6일 이후에 65세 (남성, 2018~2020년에 66세 및 2026~2028년에 67세로 점진적으로 증가) 또는 63세(여성, 2018년 10월까지 65세 및 2018~2020년에 66세 및 2026~2028년에 67세로 점진적으로 증가) 도달자
 - 가입자가 자녀, 노인, 또는 장애인 친척을 부양한 기간 또는 가입자가 특정 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부분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연기연금 : 연기 가능. 연령제한 없음
 - 신국가연금의 해외 지급 가능. 단, 통상거주지가 EU국가, EEA국가, 스위스 또는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
- 고령자 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완전기초국가퇴직연금의 60% 미만을 수급하는 자로 60세 이후의 연속적인 20년 중 10년 이상 영국에서 거주한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
- 연금 크레딧(비기여제)
 - 영연방에 거주하는 65세(남성) 및 63세(여성, 2018년 10월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증가) 이상의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지급. 소량의 퇴직저축액을 보유하고 있고 2016년 4월 6일 이전에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한 자는 65세 부터 부가적인 저축 크레딧을 수급할 수 있음
 - 연금 크레딧은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에만 해외 지급 가능

○ 장애급여

- 고용지원수당(사회보험)

- 근로능력이 없는 기간 동안 연속된 4일 이상 질병을 앓는 16세~정상퇴직 연령 미만인 자에게 지급. 가입자는 청구 직전 과세연도 2년 중 1년 동안 주당 최저소득액의 26배 이상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청구 직전 과세연도 2년 중 2년 동안 주당 최저소득액의 50배 이상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았어야 함. 자산조사형 고용지원 수당 수급자로 변경된 이후 최대 1년간 지급됨
- 최저소득액은 주당 £113(2018년 4월 기준 £116)
- 고용지원수당(사회부조, 자산조사)
 - 근로능력이 없는 기간 동안 연속된 4일 이상 질병을 앓는 16세~국가연금 수급연령 미만인 자에게 지급. 가입자가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으나, 자산조사 및 기타조건에 따라 결정됨
- 장애생계수당(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동일연령 비장애 아동보다 근로능력이 없는 기간 동안 연속된 4일 이상 질병을 앓는 16세~국가연금수급연령 미만인 자에게 지급. 가입자가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으나, 자산조사 및 기타조건에 따라 결정됨
- 개인독립일시금(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장기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16~64세(2018년 10월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증가)인 자에게 지급. 최종 3년 중 2년 이상 영국에서 영구거주 했어야 함. 3개월 동안 일상생활 또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어려움이 9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질병이 확정된 경우 즉시 지급)
- 간호수당(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영국에 통상 거주중이어야 하며 최종 3년 중 2년 이상 영연방에 거주했어야 함. 한 경우 지급. 수당은 장애발생 6개월 후 지급(수급자의 예상수명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즉시 지급)
- 간병인수당(사회부조, 소득조사)
 - 주당 35시간 이상 중증 장애인(특정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수급 중인 자)을 간호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를 그만둔 16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 간병인은 영국에 통상 거주 중이어야 하며 최종 3년 중 2년 이상 영연방에 거주했어야 하며 청구 당시 16~65세이고 주당 소득이 £101 이하로 전일제 학생(주당 21시간 이상)이 아니어야 함
 - 소득조사 : 인정비용을 공제한 후 주당 소득이 £116 이하여야 함
- ※ 장애생계수당, 간호수당, 간병인수당은 일시출국인 경우 13주까지 지급 가능하며, 치료를 위한 출국인 경우 26주까지 지급 가능. 급여는 특정 조건 하에 EU국가, EEA국가로 해외 지급 가능

○ 유족급여

- 사별지원일시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어느 한 과세연도라도 주당 최저가입소득의 25배 이상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 주당 최저가입소득은 £157(2018년 4월 기준 £162)
 - 편부모수당(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했어야 함. 편부모수당은 점차 폐지중이며, 2001년 4월 9일 ~ 2017년 4월 5일에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됨
 - 수급가능 유족은 배우자, 사망자의 자녀 1명 이상에 대한 아동급여를 수급중인 국가연금 수급연령 미만인 공식 파트너, 임신한 미망인
 - 배우자가 사망 52주 이내에 편부모수당을 더 이상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잔여 52주 동안은 사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사별수당(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했어야 함. 사별수당은 점차 폐지중이며, 2001년 4월 9일 ~ 2017년 4월 5일에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
 - 수급가능 유족은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없는 45세~국가연금 수급연령 미만인 공식 파트너
 - 사별일시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했어야 함. 사별일시금은 점차 폐지중이며, 2001년 4월 9일 ~ 2017년 4월 5일에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
 - 후견인수당(비기여제)
 - 다음 조건을 충족한 고아를 돌보는 자에게 지급; 사망한 부모가 영국에서 출생했거나 16세 이후 어느 2년 기간 중 52주 이상 영국에서 거주, 및 아동급여 요건 충족. 편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 사별수당, 사별일시금, 후견인수당의 해외 지급 가능. 단, 통상거주지가 EU 국가, EEA국가, 스위스 또는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기초국가퇴직연금(사회보험)
 - 주당 최대 £122.30(2018년 4월 기준 £125.95) 지급
 - 부분연금 : 보험료 납부 년 수에 따라 완전연금의 비율로 지급
 - 피부양자 보조금 : 주당 £73.30(2017년 4월 기준) 지급
 - 연기연금 : 국가연금 수급연령 이후 연기하는 1년당 약 10.4%씩 연금액

증가. 연속된 12개월 이상 연기한 가입자는 연기된 국가연금을 과세되는 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 수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고령 추가금 : 주당 £0.25(2017년 4월 기준) 지급

• 제2국가연금(사회보험, SSP)

- 가입자의 평균 지수소득에 따라 지급

• 신국가연금(사회보험, nSP)

- 주당 최대 £159.55(2017년 4월 기준) 지급

- 부분연금 : 보험료 납부 년 수에 따라 완전연금의 비율로 지급

- 연기연금 : 정상퇴직연령 이후 연기하는 매 9주당 약 1%씩 연금액 증가

- 경과규정 : 2016년 4월 6일 이전에 기초국가퇴직연금 및 제2국가연금제도 (구 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자로서 구 제도하의 연금액이 신국가연금제도 하의 연금액보다 더 많은 자에게는 지급액 보호를 위해 차액 지급

• 고령자 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수급자가 수급 중이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기초국가퇴직연금액과 주당 £73.30 간 차액 지급

• 연금 크레딧(비기여제)

- 가입자가 수령하는 소득에 주당 최소 £159.35(독신) 또는 £243.25(부부) 보충됨. 저축 크레딧 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주당 £13.20(독신) 또는 £14.90(부부) 수급(2017년 4월 기준)

※ 급여조정 : 근로연령 급여 및 세금 크레딧은 1년에 1%씩 조정됨. 노령 및 장애급여는 전년도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조정됨. 연금 크레딧은 평균소득 이상으로 조정됨(저축 크레딧은 미해당). 국가연금은 평균소득 증가율, 물가 상승률 또는 2.5% 중 큰 수치만큼 조정됨

○ 장애급여

• 고용지원수당(사회보험)

- 7일의 대기기간 후 주당 £73.10(16~24세인 경우 £57.90)이 근로능력 판정 기간 동안 최대 13주까지 지급. 판정 후, 주당 £73.10(16~24세인 경우 £57.90)에 £36.20(장애가 근로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추가 지급(2017년 4월 기준). 추가지급 금액은 특정 조건 하에 지급 가능

• 고용지원수당(사회부조, 자산조사)

- 급여액은 소득, 저축 및 기타 상황에 따라 결정됨

• 장애생계수당(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지급액은 간호 부분과 이동 부분으로 구성되며, 3개월의 대기기간 후 지급됨(질병이 확정된 경우 즉시 지급).

- 간호 부분 : 간호 필요 정도에 따라 주당 £83.10, £55.65 또는

- £22.00(2018년 4월 기준 £85.60, £57.30 또는 £22.75) 지급
- 이동 부분 : 이동능력 손상 정도에 주당 £58.00 또는 £22.00(2018년 4월 기준 £59.75 또는 £22.65) 지급
- 개인독립일시금(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지급액은 일상생활 및 이동 필요성에 따라 결정됨. 일상생활 지원 부분은 간호 필요 정도에 따라 주당 £83.10, £55.65(2018년 4월 기준 £85.60, £57.30) 지급. 이동 부분은 이동능력 손상 정도에 주당 £57.45 또는 £21.80(2018년 4월 기준 £59.75 또는 £22.65) 지급
- 간호수당(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간호 필요 정도에 따라 주당 £83.10, £55.65(2018년 4월 기준 £85.60, £57.30) 지급
- 간병자수당(비기여제, 소득조사)
 - 주당 £62.70(2018년 4월 기준 £64.60) 지급
- ※ 급여조정 : 근로연령 급여 및 세금 크레딧은 1년에 1%씩 조정됨. 노령 및 장애급여는 전년도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조정. 연금 크레딧은 평균소득 이상으로 조정됨(저축 크레딧은 미해당). 국가연금은 평균소득 증가율, 물가 상승률 또는 2.5% 중 큰 수치만큼 조정됨

○ 유족급여

- 사별지원일시금(사회보험)
 - £2,500 일시금 및 월 £100씩 최대 18개월 동안 지급; 배우자가 가족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3,500 일시금 및 월 £350씩 최대 18개월 동안 지급
 - 재혼 또는 동거 시에도 수당은 정지되지 않음
- 편부모 수당(사회보험)
 - 최대 주당 £113.70(2018년 4월 기준 £113.70) 지급
 - 재혼 또는 동거 시 수당 정지
- 사별수당(사회보험)
 - 지급액은 사별시점 또는 편부모 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의 유족 연령 및 사망자의 납부기간에 따라 변동됨; 55세 이상인 경우 최대 주당 £112.55(2016년 4월 기준); 45~54세인 경우 최대지급액의 비율로 지급. 수당은 사망 이후 최대 52주 동안 지급됨
 - 재혼 또는 동거 시 수당 정지
- 사별일시금(사회보험)
 - 일시금 £2,000 지급(2017년 4월 기준)
- 후견인수당(비기여제)

- 각 수급가능 자녀 1인당 주당 £16.70(2018년 4월 기준 £17.20) 지급
- ※ 급여조정 : 근로연령 급여 및 세금 크레딧은 1년에 1%씩 조정됨. 노령 및 장애급여는 전년도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조정. 연금 크레딧은 평균소득 이상으로 조정됨(저축 크레딧은 미해당). 국가연금은 평균소득 증가율, 물가 상승률 또는 2.5% 중 큰 수치만큼 조정됨

7. 관리운영기관

- 근로연금부 연금공단(Pension Service of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work-pensions
 - 국가연금제도 관리운영, 연금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 제공
-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 국가보험 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제도 관리
- 근로연금부 직업센터(Jobcentre Plus of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work-pensions
 - 근로세대에 대한 급여 관리와 구직활동 지원

<2018년 ISSA 자료>